

전자책 갈등과 라이선스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Book Conflicts and Type of License

이호신 (Hosin Lee)**

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e-book licenses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ierce conflict surrounding e-book licenses between domestic librarie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the legal meaning of e-book licenses is analyzed,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librarie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book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e-book licenses are classified, and the status of library e-book licenses and conflict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domestic issues are presented.

키워드: 전자책, 라이선스, 저작권, 최초판매의 원칙, 디지털도서관
e-book, license, copyright, first sale doctrine, digital library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부교수(leehs@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23년 2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3월 15일
■ 정보관리학회지, 40(1), 199-224,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1.199>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여는 말

문자가 탄생한 이래로 도서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 탄생한 것은 인쇄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지적 성장을 지원했다. 도서의 자유로운 대출은 이런 도서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책의 등장과 확산은 도서관의 주된 서비스인 도서 대출의 법적 기반을 뒤흔들면서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종이책과는 달리 전자책은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전자책의 특성은 도서 대출에 적용되는 법적 원리를 무력화하면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구매한 종이책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지만, 전자책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것이다. 전자책 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책의 구매와는 별도로 저작권자인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이호신, 2023).

그런데 출판사들은 전자책 대출이 판매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도서관이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

작한 것이 벌써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도서관과 출판계는 전자책의 라이선스와 그 조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출판사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라이선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다(구모니카, 2015; 김찬동, 2014; 양지열, 2012; 한국출판인회의,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한주리, 2021). 그 대부분은 국내 전자책 라이선스의 영구소장형이 저작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출판계의 이런 주장에 대응하여 도서관계에서도 전자책 라이선스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백지원, 2014; 신정아, 2021; 오지은, 2014; 2021; 이지연, 2014; 이용훈, 박상미, 2013; 이호신, 2020; 2021a; 2021b; 2023).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데에 그치거나 서로의 시각 차이만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그 접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갈등은 점차 고조되었고, 급기야 지난 202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뒤이어서 8개 출판사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2586). 이런 갈등 상황이 첨예하게 지속된다면, 소송의 불뚱이 어느 도서관으로 또 옮겨붙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형편이다(이호신, 2023).

이 연구는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서,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함께 다룬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면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도서관과 출판계의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틔우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대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자 한다.

2. 갈등의 출발점

2.1 전자책의 대출과 최초 판매의 원칙

저작권법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을 서로 다른 행위로 바라본다. 종이책 대출은 도서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배포의 일종이다. 이와는 달리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이 담긴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가 배포인지 아니면 복제와 전송인지 살피는 까닭은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이 적용되고,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호신, 2021a; 2023).

저작권법은 배포를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저작권법 제20조 제23호)으로 정의한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배포권을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적법한 거래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복제권과 전송권을 규율하는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는 이러한 단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적법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저작자는 여전히 복제와 전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종이책의 대출은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저작권법 제20조가 적용된다. 도서관이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에 배포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종이책 대출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가 적용된다. 적법한 방

1) 2021년 5월 6일 (주)메디치미디어, (주)다산북스, (주)마이드팻, (주)새로운사람들, (주)학지사, (주)도서출판 한울출판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8개 출판사가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였다(2021가합532586).

법으로 전자책을 입수했다고 해도, 전자책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자인 권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대개 도서관은 전자책의 수급을 위해서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 속에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허락의 요건을 함께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얻는 라이선스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전자책 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이호신, 2023).

통상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자나 출판사가 유통사에게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출판사들은 대체로 도서관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전자책의 소비자 판매가 감소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라이선스의 조건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도서관 제공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고,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여 전자책의 도서관 제공이 판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다.

2.2 판매 감소에 대한 출판사의 우려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서 저작권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 이것은 종이책과는 구별되는 전자책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종이책을 도서관에 대출하고 반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거주자나 근무자 등 상대적으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시간은 도서관이 개관하는 동안으로 제한이 된다. 종이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개관 시간 내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담은 도서관 방문이 어렵고 귀찮은 사람들 상당수가 책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전자책은 굳이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출할 수 있다.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시간도 심야 시간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된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이것을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출판사는 커다란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다. 도서의 구매 수요 대부분을 도서관이 수렴해서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으리라고 염려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종이책의 경우, 도서 자체를 물리적으로 점유한 매우 소수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책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이 담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한 종이책은 해당 도서가 반납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면 도서 대출을 위해서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외는 달리 전자책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도,

전자책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얼마든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불편 없이 전자책을 빌려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판매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셋째, 이용에서 비롯되는 도서의 물리적인 열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종이책의 경우 많이 이용하면 표지나 면이 낡고, 훼손돼서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추가 구매를 통해서 도서의 이용에 대해서 출판사에게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파일로 구성된 전자책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한 번 제공된 전자책은 아무리 많이 이용된다고 해도, 책 자체가 낡거나 훼손되어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면서, 판매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게 된다(Sisto, 2021).

종이책과는 구별되는 전자책의 이런 특성은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서관의 대출이 전자책의 판매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출판사들의 우려는 도서관의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도서관에는 전자책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간도서를 도서관에 제공하지 못하게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 판매에 비해서 높은 가

격을 책정하거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상세하고 까다롭게 제시해서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도록 유도한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입장과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출판사들의 입장은 라이선스 조건을 놓고 서로 맞부딪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3. 전자책 라이선스의 의미와 유형

3.1 전자책 라이선스의 의미와 요건

전자책 라이선스는 특정한 전자책을 도서관이 복제와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룸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반되는 두 의사표시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책 라이선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가 포함되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추게 된다(이호신, 2023, 443). 이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또한 계약 속에 담긴 요건에 따라 전자책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다. 라이선스는 전자책 대출의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아울러 서비스 제공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전자책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계약

으로 성립하기 위한 거래의 당사자, 대상, 조건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전자책에 관한 저작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출판사들이 거래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조건을 도서관이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거래의 조건에는 전자책의 가격, 대금 지급 방법, 이용 기간과 횟수, 동시 사용 허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3.2 전자책 라이선스의 유형

전자책 라이선스는 출판사가 제시하는 개별적인 거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책 파일의 제공 여부, 이용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 거래의 방법, 대금 지급의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1>은 전자책 라이선스를 거래의 조건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영구형은 도서관이 기간이나 이용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영구형은 다시 전자책 파일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소장형과 접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구소장형은 전자책 파일의 소유권을 도

서관에 넘겨주고,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영구소장형과 달리 영구접속형은 전자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도서관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당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전자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구소장형과는 구별되지만,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영구소장형이나 영구접속형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대체로 동시 사용자의 수를 도서관이 구매한 카피 수로 제한해서 종이책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제한형(metered license)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매나 계약이 필요하다. 이용 기간과 이용 횟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전자책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과 횟수를 혼합해서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필요해서, 도서관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기간제한형은

<표 1> 전자책 라이선스의 유형

구분		파일 제공	기간 제한	횟수 제한	동시 접속 허용	대금지불
영구형	소장형	O	X	X	X	선지급
	접속형	X	X	X	X	선지급
제한형	기간제한형	X	O	X	O/X	선지급
	횟수제한형	X	X	O	O	선지급
	혼합형	X	O	O	O	선지급
구독형		X	O	X	O	선지급
과금형		X	X	X	O	후불(이용당)

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다. 대체로 동시 이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제한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횡수제한형은 일정한 횡수(26회~52회)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용 횡수가 제한 요건이기 때문에, 동시 이용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대출 횡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구독형(subscription model)²⁾은 개별 전자책 타이틀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가 아니라 유통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전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이다. 연간이나 월간 구독료를 먼저 지급하면 비교적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독기간이 종료하면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사라져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유통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만을 서비스할 수 있어서 사서들의 도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대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 활용된다.

과금형(pay per view)은 전자책 유통사의 플랫폼에 콘텐츠 목록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일정 정도 지불하고,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라이선스이다.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도서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도서에 보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학술서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출판사와 저작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거래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거래의 조건들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국가별 사례와 갈등의 양상

4.1 국내 현황

국내의 전자책은 1980년대에 CD-ROM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예인정보, 바로북, 북토피아 등 전자책 전문 기업이 탄생하였고, 전자책 전용 단말기도 개발되었다. 초창기 전자책 시장은 주로 도서관 납품과 장르 소설에 의지해서 성장했다. 2006년에는 교보문고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 예스24, 인터파크 등이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였다. 이와 함께 아마존 킨들과 아이패드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전자책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한국출판문화진흥원, 2021b, 10-11). 2020년 국내 출판사의 매출액 규모는 약 3조 8,728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전자책은 약 4,6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24). 문화체육관광부(2022)의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독서율 전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독서율은 증가하고 있다. 전자책 시장은 앞으로도 더

2) 국내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파일을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소장형으로, 전자책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구독형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다.

육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B2B 분야의 출판 유통업체 가운데에는 교보 문고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예스24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북큐브, 웅진 OPMS, 우리전자책 등도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해 B2B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18). 교보문고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대학,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기업, 초/중/고등학교 등과 계약하여 구축해서 전자책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책 B2B 매출액은 전체 전자책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예스24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클럽’도 법인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전자책 매출액 약 360억원 가운데 10%가량이 B2B 매출에 해당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130).

도서관은 전자책이 등장한 초창기부터 주요한 구매자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전까지 전자책 시장은 주로 도서관과 학교 등의 기관을 상대로 하는 B2B 판매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2018년 현재 B2B 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인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예산은 80억~1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18). 2020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총 976만 종으로, 그 가운데 전자책은 약 346만 종이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133). 전자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전자책의 도서관 판매 방식 등 라이

선스의 조건을 둘러싸고,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납품 이후에는 추가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 유통과 정산에 대한 출판사들의 불신 등으로 말미암아 도서관에 대한 전자책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주요 출판사의 신간과 베스트셀러의 도서관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18).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대체로 전자책 파일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이전받는 영구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구모니카, 2015; 이호신, 2021b; 한국출판인회의, 2018).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는 전자책 구매 방식을 크게 소장형과 구독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장형은 도서관이 구매한 전자책의 파일을 유통사로부터 넘겨받고 도서관 서버에 탑재해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구독형은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사의 서버에 일정 기간 또는 일정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접속을 허락받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내 도서관은 내부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하여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런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구모니카, 2015; 한국출판인회의,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는 배타적 발행권자(출판사)가 정해 놓은 이용 방법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 계약이지, 전자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자책의 발행을 위해서 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

정하게 된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게 되면 출판사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배타적발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은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관외대출하는 것은 도서관이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이런 불만으로 2021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자책 서비스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출판사 8곳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전자책의 판매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유통사의 B2B 전자책 계약은 납품 계약이 아니라 전자책 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도서관이 해당 전자책을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관내에서 도서관이 설치한 제한적인 기기에서의 열람만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15년에 자체적으로 전자책 라이선스 정책을 발표하였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60). 한국출판인회의가 제시하는 전자책 공급 방식은 전자책의 대출 회수를 제한하는 유형,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유형, 영구이용권 계약 이렇게 세 가지이다. 대출 회수를 제한하는 유형은 대출 횟수 25회를 기

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이용에 대해서 이용권을 재구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 경우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용 기간을 제한하는 유형은 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유형의 이용 허락 계약이다. 이 경우 전자책의 동시 사용자는 1카피당 1명으로 제한된다. 셋째, 영구이용권 계약은 전자책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 횟수나 기간에 상관 없이 해당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계약이다. 다만, 출판사의 배타적 발행권이 소멸하게 되면, 도서관의 전자책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함께 사라진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60-61).

한국출판인회의는 연간 구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출판콘텐츠 제휴사 중 도서관 서비스를 허락한 출판사에 한해 전자책을 제공하며, 창비, 길벗, 돌베개,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약 180개의 단행본 출판사의 신·구간 약 7,000여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62). 서울도서관은 2016년에 출판계가 제안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수용해서 연간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른 도서관으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가 제안한 라이선스는 국내 도서관 운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널리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서관의 장서 구입은 주로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라장터에 게시된 도서관의 전자

책 입찰공고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체 43건 가운데 39건이 소장형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여전히 도서관들은 전자책을 구매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전자책을 물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확고하지만, 출판계가 제안한 라이선스 모델은 조금씩 도서관 서비스에 수용되면서 전자책 서비스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이호신, 2023).

한편 2022년에는 국회부산도서관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대출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형이 아니라, 대출 건수 당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로 전자책 구매를 시도하였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제안한 라이선스는 도서관이 전자책 공급사에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 모델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전자책에 대해서만 과금이 이루어지는 후불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비용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도서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자책의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예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내 B2B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교보문고는 2022년에 기존의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모델에 더해서 대여형 모델로 후불형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도서관 공급을 시작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열람 도서에 대해서는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 건당 700~8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³⁾ 도서관은 동시 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월 운용 예산 상한선을 미리 지정해서, 상한 금액에 도달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주요 전자책 유통사 가운데 하나인 리디북스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구독서비스인 '리디셀렉트'에서 B2B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자책 월정액 서비스를 출시한 밀리의 서재도 B2B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2B 서비스 공급가격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130-131). 이뿐만 아니라 알라딘도 최근 Books라는 B2B 전용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정액이나 후불형 과금으로 전자책을 유통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2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출판 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전자책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미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자책은 1930년대 밥 브라운(Bob Brown)이 <The Readies>라는 책에서 독서 기계와 독서에 혁명을 가져다 줄 개념으로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한국출판문

3) 전자책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언에 따르면, 교보문고의 후불형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일반도서 정가의 5.2%이고, 실제 가격은 800원을 상회한다.

화산업진흥원, 2021a, 168). 이후 전자책이 현실화한 것은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Gutenberg Project)'를 시작하면서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비롯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 것이었다. 1986년에는 미국백과사전이 CD-ROM에 담겨 출간되었고, 1990년대에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책과 함께 CD로 나오면서 종이책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최초의 전자책 단말기 로켓e북을 누보미디어에서 선보였고, 2006년에는 전자책을 대중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한 아마존의 킨들(kindle)이 출시되었다. 이후 미국의 전자책 산업은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a, 146).

미국 도서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전자책을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당시 전자책은 학문적, 전문적인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운로드할 수 없었다. 이후 2003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대중소설과 논픽션을 제공했으며, 공공도서관도 전자책 대출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서관은 전자책 장서 보유에 있어 60% 이상 성장했다. 미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공공도서관의 66%가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콘텐츠는 오버드라이브(Overdrive) 또는 후플라(Huppla)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2021a, 147).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 9,213개 전체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책은 약 4억 6천만 부로 전체 장서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오디오북도 약 2억 6천만 부로 전체 장서의 16.5%에 달한다(Pelczar, M. et al., 2019).

이렇게 도서관 장서 가운데 전자책이 종이책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그 구매와 서비스 요건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전자책 구매 계약은 도서관과 유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출판사가 제시한 요건에 맞추어서 그 구매와 서비스 요건이 달라진다. 특히 2013년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Capitol Records v ReDigi)을 내린 이후, 대형출판사들은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납품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미국 출판시장을 주도하는 Big5 출판사들(Penguin Random House, Hachette Book Group, HarperCollins, Simon and Schuster, Macmillan)은 신간 도서에 대해서 엠바고⁴⁾(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서관 납품 유보)를 설정해서 도서관 납품을 유예하거나, 열람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도서관에 제공하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3~5배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34). 2020년에 이루어진 연구(The Joint Digital

4) Macmillan은 2019년 11월에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은 발행 후 8주가 경과한 이후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발해서 도서관들이 Macmillan이 발행한 도서 전체의 구매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에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였다.

Content Working Group, 2020)에 따르면, 전자책의 제한된 라이선스 모델 도입 이후 전자책 구매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의 전자책 구매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출판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라이선스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1) 영구 접속 / 동시 접속 불허(Perpetual License, One User per one Copy): 전자책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영구적인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이 경우 도서관이 계약을 체결한 부수만큼으로 전자책의 동시 사용자 수는 제한된다. 한 번의 비용 지불로 전자책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이용자가 인기 도서를 대출하는 데 필요한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 형태이다.⁵⁾ 우리나라의 구매 및 서비스 방식과 유사하지만, 전자책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ig5 출판사는 영구 접속형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영구 접속 / 동시 사용 허락(Perpetual Access & One Copy / Multi-User): 기간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 사용자의 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이다.

동시 사용자를 제한하면, 전자책 대출을 위한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라이선스는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서 미국의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이선스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주로 학술/전문서 또는 교육 출판사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 3) 기간 제한형(Metered License with Time Limit): 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접속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2년, 10년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2년이 가장 많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의 접근 권한은 사라지며, 재구매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Haper Collins를 제외한 Big5 출판사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영구접속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장점이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책에 대한 추가 구매 예산을 반복적으로 책정해야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4) 대출 회수 제한형(Metered License with Circulation Number): 전자책의 대출 횟수를 제한하여 정해진 회차만큼 대출이 발생하면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일정한 횟수로 전자책의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동시 사용자의 제한은 그리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Big5 출판사 가운데 Haper Collins는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26회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기간 제한형과 마

5) Library Journal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Big5 출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 조건으로 도서관에 전자책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 찬가지로 영구접속형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용률이 높은 전자책의 경우에는 재구매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이 있다.
- 5) 구독형(Subscription): 도서관이 정해진 구독료를 일괄 지불하고, 유통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에 대해서 일정 기간(대개 1년)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대출 횟수나 동시 사용자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은 구간(backlist)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간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구독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영구접속 방식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많은 전자책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구접속형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Price: 2015).
- 6) 대출당 지불(Cost per Circ): 유통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자책의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도서관의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지출이 도서관의 사전 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다. 또한 베스트셀러 위주의 콘텐츠 이용으로 중소 출판사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

다. 그러나 전자책의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하여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자책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 의회는 디지털 버전의 최초판매의 원칙이나 도서관에 대한 예외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를 발표하였다. 향후 그 논의 과정과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독일

독일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출판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27). 전자책 시장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독일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었다. 2007년 4개 도서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에 공공도서관 납품 전문 기업 디비립(Divibib GmbH)이 구축한 전자책 대출시스템 온라인어(Onleihe)를 통해 전체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디비립사는 온라인어를 통해서 16만 권의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디비립은 출판사와 협의해서 라이선스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도서관에 전자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2년에는 500개의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현재 3,000여 개(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함)의 도서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43).

전자책 대출이 시행된 초기인 2009년에는 25만 건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Elib, 2016,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도서관을 통해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전자출판물 이용의 40%를 차지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27).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도서관계와 출판계도 전자책의 구매와 서비스 방법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독일에서 전자책은 도서관정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은 도서관정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서관은 소비자 판매 정가의 2~3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 소위 윈도우(windowing)이라는 지연 제도를 두고 있어서 도서관에는 납품하지 않는다.

독일도서관협회는 신간의 납품을 지연시키고,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구입 대상 전자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출판사의 허락 여부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필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에 유럽 사법재판소(CJE)의 판결(C 174.15 Vereniging Openbare Libraries

v Stichting Leenrecht)⁶⁾을 계기로 독일 도서관협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https://www.bibliotheksverband.de>). 독일 연방의회가 2021년 3월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출판사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이 시장에 출시되는 즉시 비영리 도서관에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을 한 번에 한 사람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https://www.bibliotheksverband.de>).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도서관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출판사와의 계약 없이도 전자책 한 권을 한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도서관들은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모델에 따라서 전자책을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M라이선스: 전자책 한 권에 동시 사용자 1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라이선스로 대개 12개월 동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 방식이다.
- L라이선스: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동시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M라이선스로 구매한 도서의 이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이다.

6) 2016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도서관협회가 네덜란드 작가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동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기술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출판사의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XL라이선스: 정가의 3배를 지불하고 20-25회의 대출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약정된 대출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2명의 이용자에게만 동시 접속이 허용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라이선스이다.

4.4 프랑스

프랑스의 전자책 시장은 여전히 종이책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2020년에는 출판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8% 성장했다. 2021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26%가 이미 디지털도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51).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출판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전자책 출판에 대한 자금 지원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립도서센터의 디지털도서 출판 지원금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도서 제작 비용의 최대 60%, 최소 2,000유로에서 최대 50,000유로까지를 지원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57).

프랑스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최초로 실시된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법률(2011.5.26. 법률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은 전자책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전자책을 도서관정가제에 포함하고 있다. 전자책의 발행자인 출판사가 전자책의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전자책의 이용 조건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창규,

2019, 180). 출판사는 전자책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인지,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서의 집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나 출력이 가능한 것인지 등 전자책의 세부적인 이용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일한 전자책에 대해서도 이용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전자책 판매 업체는 출판사가 정한 전자책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의 시행과 함께 프랑스 정부는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PNB(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출판협회와 서점연합과 함께 전자책 통합 플랫폼 Bibook을 개발하였다. 현재 프랑스 도서관의 전자책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014년 Bibook을 개통할 무렵, 도서관, 서점, 출판사, 저자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서명한 협약을 체결해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12가지 원칙을 확립하였다(Elib, 2016, 10).

- 1) 공공도서관은 저자가 출판사에게 허락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전자책을 제공할 수 있다.
- 2) 모든 유통사는 출판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가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3) 도서 정보 이외에 가격, 이용 기간, 약관에 대한

-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자책을 관리할 수 있는 고품질의 메타데이터가 함께 도서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4) 폭넓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제공되는 다양한 카탈로그 간에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 5) 이용자들이 디지털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호대차를 통해서 자신이 소속한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의 디지털 영역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6) 전자책의 대출과 판매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도서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루어진다.
 -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통제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용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8) 읽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을 권장한다.
 - 9) 운영자는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면서 이용 통계를 공유해야만 한다.
 - 10) 저자는 추가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11) 다양한 재무 모델을 실험한다.
 - 12) 저자와 출판사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프랑스에서는 전자책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가격 모델도 표준화되었다. 프랑스 도서관은 출판사가 제시하는 매우 다양한 이용 조건과 가격을 고려해서 전자책의 구매를 결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서관의 전자책 수서 프로세스는 한결 수

월해졌고, 출판계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도서관을 위한 전자책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spingue-Perrin, 2013, 96). 또한 전자책의 가격과 이용 조건이 모두 공개되면서, 전자책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는 달리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은 그리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Elib, 2016, 10).

PNB는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제시하는 판매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출판사는 이용 기간과 대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별 타이틀에 대해서 동시 사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판사들은 전자책 라이선스의 기간을 1년부터 10년, 그리고 영구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구 접속이 허용되는 라이선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년 미만의 이용 기간을 허락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출 횟수에 대한 제약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30회 또는 무제한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시 접속자는 1명, 5명, 20명, 30명을 허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51-156 참조). 전자책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종이책의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2014년에 몇몇 출판사가 라이선스 비용을 급격하게 인상하기도 했다(Elib, 2016, 10).

4.5 일본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CD-ROM 버전의 전자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에는 소니사에서 전자책 리더기를, 1993년에는 NEC에서 디지털도서 플레이어 출시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앞서 나갔다. 1997년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아오조라문고(靑空文庫)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서 전자책이 처음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했다(Goto, Kim, & Inagaki, 2015, 48). 일본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나갔지만, 전자책으로 구현된 일본어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일본에서 전자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이다. 라쿠텐의 고보, 구글 플레이북스, iBook3 등이 출시되면서 일본에서도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킨들과 같은 전용리더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만화를 비롯한 코믹물과 장르소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2021년 5,510억 엔으로 2020년 4,821억 엔보다 689억 엔(14.3%)으로 성장했고, 2026년에는 8,000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落合 早苗,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 2022).

도서관에서는 2011년 사카시립도서관(堺市立図書館)이 도서관유통센터(TRC)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까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점차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일본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자책 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436개

이며, 344개의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電子出版制作流通協議會, 2022).

전자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LibrariE & TRC-DL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학도서관 152개 관, 학교도서관 168개 관, 공공도서관 323개 관, 기타 8개 관으로 651개 이상의 도서관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을 대출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OC/OU(One Copy One User) 모델은 도서관이 구입한 전자책의 부수만큼 동시에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2년 또는 52회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둘째 과금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OC/OU 모델의 라이선스가 종료된 도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소액의 이용료를 과금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셋째, OC/MU(One Copy/Multi user) 모델로, 하나의 전자책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 여름방학 과제도서나 부교재 등 한정된 기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미디어두사에서는 미국의 오버드라이브사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 내에 외국어 도서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5,000개 출판사, 100개 언어 이상, 160만 종이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도서는 3만 3,000여 종이고, 여기에는 아우조라 문고 11,000여 종이 포함된 것이다. 미디어두사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진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75만~150만 엔, 운영비는 월간 3만~8만엔, 콘

텐츠 구입비는 연간 50만~250만 엔이며, 학교도서관은 초기 비용 10만 엔, 운영비 월간 1만 엔, 콘텐츠 구입비 연간 30만~50만 엔 규모이다.

4.6 전자책 갈등의 양상과 각국의 라이선스 현황

전자책 라이선스는 각국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정도,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의 도입 여부, 도서관 가격제의 시행 여부, 전자책 관련 입법 여부, 주도적인 출판사업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도서관 제공이 판매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해서 도서관에 대하여 까다로운 거래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도서관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빅5가 주도하는 까다로운 라이선스 조건과 신간도서 제공 지연, 지나치게 높은 전자책 가격에 도서관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일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소송과 법률 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도서관이 아니라 출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출판사들은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래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라이선스의 조건은 권리자인 출판사가 제시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거래의 주도권은 권리자인 출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쪽은 오히려 출판사들이다. 전자책을 거래에 제공한 출판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책을 구매한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까닭은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시장에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핵심적인 열쇠는 권리를 보유한 출판사들이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전자책 유통 관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자책 거래는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조건을 반영해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조건으로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호신, 2023). 도서관은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유통사와 체결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부정하고,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책의 가격과 거래의 조건을 유통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도서관이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하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조건과 가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전자책 라이선스는 소유권 인정 여부, 이용 허락의 시간적 범위, 동시 사용 허용 여부, 비용 지불 및 산정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된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자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전자책 파일까지 제공하는 영구 소장형은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대부분이 이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간제한형, 구독형, 과금형의 라이선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구소장형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자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영구소장형이 아니라 영구접속형, 기간제한형, 횡수제한형 등 여러 유형의 라이선스 조건이 개별 전자책 마다 반영되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빅5 출판사들이 내세우는 서로 다른 거래의 조건들은 도서관과 유통사의 계약 속에 모두 반영되어 처리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출판사들이 라이선스의 조건들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모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시사점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처한 형편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출판사들은 전자책 대출로 야기되는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도서관은 전자책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출판계의 대화와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관은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에 수록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저작자나 출판사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출판사들이 이용 허락의 조건을 제시하면, 도서관은 이를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서관은 유통사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거래 조건에 따라서 구매 대상을 선정해 왔을

<표 2> 주요 국가별 라이선스 채택 현황

국가별	영구소장형	영구접속형	기간제한형	횡수제한형	혼합형	구독형	과금형
한 국	O	X	O	X	X	O	O
미 국	X	O	O	O	O	O	O
독 일	X	X	O	X	O	X	X
프랑스	X	O	O	O	O	X	X
일 본	X	X	O	X	O	X	O

뿐이다. 서버에 전자책 파일을 직접 탑재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영구소장형 위주로 전자책을 확보한 것은 도서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거래 관행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와 라이선스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이 거래의 조건을 강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조건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출판사별로 차별화된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관행은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출판계의 오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선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 바로 잡혀야 한다. 출판사들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고유한 지위를 활용해서 원하는 거래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조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통사들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자책 거래는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거래의 조건이 다양하게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유통사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 전자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매자의 입장인 도서관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전자책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출판사들은 도서관에 전자책 납품하기를 주저하고 꺼리도록 만들었다. 유통사가 가진 독점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출판사들은 유통사에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용으로 전자책의 거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판사

들은 이러한 거래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사가 저작권이나 배타적 발행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래 모델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유통사들은 출판사들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도서관이 대상 전자책을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만 한다.

셋째, 출판사와 유통사는 라이선스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떤 저작물이 어떤 조건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것인가를 파악하려면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도서관은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해 왔다. 그 결과 일부 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등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서관은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전자책의 가격과 라이선스의 조건을 유통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법적 의무로 부여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거래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 책은 저자와 출판사의 지적인 노력의 결

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책 속에 담긴 지식과 정보는 비단 저자만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사회적인 자산으로서, 공공재적인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 문화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에 주목하는 출판사와 지식과 정보의 공공재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도서관의 시각은 이처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판매를 통한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출판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지식과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지향하는 도서관이 옳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전자책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 결과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부 또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를 펼치고, 도서관과 출판계가 상생할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닫는 말

지식과 정보는 사회적인 공공재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

이래 도서관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도서관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왔다. 무료 대출은 도서관의 이런 믿음과 철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도서관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었던 숨은 배경 속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 저작물을 입수하면, 이후 저작자의 배포권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의 원리이다. 도서관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 없이 자유롭게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하면서 시민들의 지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 환경 속에서도 도서관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자책은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그것을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는 다른 법률 행위이다. 종이책의 대출이 저작물의 배포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구입한 전자책이라고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도서관이 전자책을 시민들에게 대출해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전자책도 1카피를 1명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출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하는 사례가 없지 않지

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책 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 도서관은 출판사로부터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고,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자책은 단순히 종이책의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를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출판사는 판매 감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주요 국가들에서 전자책은 이미 도서관 서비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출판계와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저작권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신간 제공을 지연하거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아예 도서관 납품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수용해야 하는 도서관들은 출판사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정부의 입법적 개입을 요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도서관과 출판계의 갈등은 전자책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합리적인 전자책 라이선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의 대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법적 환경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아울러 주요 국가에서의 실제 라이선스 형태를 살펴보고, 전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다양한 종류를 정리하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책에 담긴 콘텐츠는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 저작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유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고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출판사는 전자책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서 다양한 거래의 조건을 우선 제시할 의무가 있고, 도서관은 출판사가 제시한 거래의 조건에 따라 해당 전자책의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대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구모니카 (2015).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컬창의문화연구, 4(1), 76-95.
- 김찬동 (2014). 전자책 공공 수요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법률 제언.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51-53.
- 대한민국 저작권법. (법률 제18547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 백지원 (2014).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13-135.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113>
- 신정아 (202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2), 97-112. <http://dx.doi.org/10.23089/jdca.2021.4.2.007>
- 양지열 (2012). 법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기획회의, 330, 42-45.
- 오지은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에 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49-50.
- 오지은 (2021).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도서관계의 입장.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 이용훈, 박상미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69-81.
-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3-24.
- 이창규 (2019). 전자책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연구: 프랑스 전자책 가격 관련법에서의 시사. 유통법연구, 6, 171-193.
- 이호신 (2020).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43-57.
- 이호신 (2021a).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31-15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131>
- 이호신 (2021b). 전자책 구매 개선 방안.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 이호신 (2023).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특성과 실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435-456.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435>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a). 미국출판산업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021 해외출판시장 조사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인회의(2018).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길잡이: 현황, 계약, 제작, 유통까지 전자책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 한국출판인회의.
- 한주리 (202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상생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7(6), 107-129.
<http://dx.doi.org/10.21732/skps.2021.103.107>
- 電子出版制作流通協議會 (2022). 電子図書館・電子書籍貸出サービス 調査報告2022. 東京: 電子出版制作流通協議會.
- 落合 早苗,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 (2022). 電子書籍ビジネス調査報告書 2022. 東京: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Covid-19 and Libraries: E-book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Available: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453>
- Elib (2016). About e-book library model worldwide. Stockholm: Elib.
- Goto, H., Kim., B., & Inagaki, K. (2015). The current state of e-books and digital libraries of Japan.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16(IV), 48-57.
http://doi.org/10.48009/4_iis_2015_48-57
- Pelczar, M., Frehill, L. M., Williams, K., & Nielsen, E. (2019). Data File Documentatio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17.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 Price, G. (2015, September 15) New Pew Report: "Libraries at the Crossroads", Includes Data about Ebook usage,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new-pew-report-libraries-at-the-crossroads-includes-data-about-ebook-usage>
- Respingue-Perrin, S. (2013). Too early, too fast? the regulation of the ebook market in france and its possible effects on EU libraries. Liber Quarterly, 23(2), 81-109.
<https://doi.org/10.18352/lq.8539>
- Sisto, M. C. (2022). Publishing and library e-lending: an analysis of the decade before covid-19.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38, 405-422. <https://doi.org/10.1007/s12109-022-09880-7>
- The Joint Digital Content Working Group (2020). The Need for Change: A Position Paper on E-lending by the Joint Digital Content Working Group.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The-Need-for-Change-A-Posi>

tion-Paper-on-E-Lending-by-the-Joint%20Digital-Content-Working-Group-2.pdf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2014). E-book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issu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113-135.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113>
- Copyright Act of Republic of Korea. Act no.18547.
- Goo, Monica (2015). Issues and revision of electronic library service: focusing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e-book BtoB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 4(1), 76-95.
- Han, Julie (2021). Study on the win-win plan of library e-book servic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with publishers. *Studies of Korean Science*, 47(6), 107-129.
<http://dx.doi.org/10.21732/skps.2021.103.107>
- Kim, Chandong (2014). Tasks and legal proposals for vitalizing public demand for e-books. *Proceeding for Discussion for Vitalization of Electronic Publishing*, 51-53.
- Korea Publishers Society (2018). *E-book Guide for Publishers: Everything We Need to Know About E-books, from Current Status, Contrac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oul: Korea Publishers Society.
- Lee, Chang-Kyu (2019). A study of e-book resale price maintenance system: focusing on lang law in france. *Distribution Law Review*, 6(1), 171-193.
- Lee, Hosin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e-book purchasing methods for libraries.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Proceedings*, 43-57.
- Lee, Hosin (2021a). Library's e-book service and copyri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131-15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131>
- Lee, Hosin (2021b). E-book purchase improvement plan, 2021 KLA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 Lee, Hosin (2023).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library e-book purchase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435-456.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435>
- Lee, Jiyeon (2014). Exploring progressive strategies for the use of e-books in public libraries.

- Discussion to Promote E-publishing, 3-24.
- Lee, Yonghoon & Park, Sangmi (2013). A study on the status of e-book service in public librari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2013 Summer Academic Presentation, 69-8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Survey on the National Reading in 2021.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Oh, Jieun (2014). The position of the public library on the search for a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e use of e-books in the public library. Discussion to promote e-publishing, 49-50.
- Oh, Jieun (2021). The library world's position on e-book service, 2021 KLA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0). A Study on Improving B2B Contract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in Public Libraries.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a). American Publishing Industry Research.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b). Research for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Analysis and Vitalization.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c). Overseas Publishing Market Research.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Shin, Jeonga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library e-book lending services - focused on Gyeonggi-do cyber library.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4(2), 97-112.
<http://dx.doi.org/10.23089/jdca.2021.4.2.007>
- Yang, Jiyeol (2012). The law doesn't 'take care of it' - a legal problem with library e-book services. Planning Meeting, 330, 42-45.